



대한건설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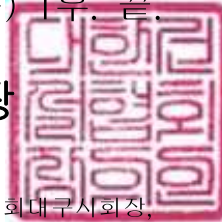
수신자 수신자 참조

제목 건설현장 외국인력 불법고용 관련 단속 주의안내

1. 귀 시·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최근 건설현장별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에 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3. 동 사항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, 사용자는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3년간의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,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8조 및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4. 건설현장 외국인력 불법고용으로 회원사가 처벌 및 불이익받지 않도록, 동 주의사항이 관내 회원사 및 건설현장에 계도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건설현장 취업가능 비자(단순노무기준) 1부. 끝.

대한건설협회장



수신자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장, 대한건설협회부산시회장, 대한건설협회대구시회장,
대한건설협회인천시회장, 대한건설협회광주시회장, 대한건설협회대전시회장,
대한건설협회울산시회장,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장, 대한건설협회강원도회장,
대한건설협회충북도회장, 대한건설협회충남·세종시회장, 대한건설협회전북도회장,
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장, 대한건설협회경북도회장, 대한건설협회경남도회장,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장

07/03

차장 서정민 팀장 황승현

협조자

시행 외국인력고용지원팀-170 접수
우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/ <http://www.cak.or.kr>
전화 02-3485-8200 전송 02-518-9963 / jmseo@cak.or.kr / 공개